

## · 예산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

지방재정법 제47조,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3 회계연도  
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한 것은

-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예산이용( | 2 건)   | 110,000,000 원      |
| 2. 예산전용( | 5 건)   | 439,946,000 원      |
| 3. 예산이체( | 186 건) | 52,084,929,630 원이며 |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